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해설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서기관 | 최 두 선

I 들어가는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집행기준은 2006년에 처음 만들어 졌다.

만들어진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2005년 폐지되면서 예산편성 지침속에 들어있던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모두 없어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되고 어려움을 호소하여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 것이다.

그후 금년부터 사업예산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일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서식을 변경해야 되고 비목별 예산집행방법이 달라지면서 세출예산의 집행기준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 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대 및 효율성을 바라는 주변의 요구가 점차 높아져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발생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월 13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개정 하였으며 본고에서는 주요한 개정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II. 주요개선 내용 해설

1. 이월예산 집행방법의 개선

중전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이월된 예산은 당해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사업에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사업 예산제도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의 전용이 허용됨에 따라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내에서는 통계목간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변경사용의 경우에는 소속 실과 내부결재와 예산부서 협의를 거치면 가능해진다.

2. 동일 구조물 사업의 통합발주 활성화

지방자치단체는 유사한 사업들의 발주가 빈번하게 발주되고 있다 특히 동일구조물사업이나 동일현장사업들도 국고보조금의 지원형태나 사업추진부서의 분리 등으로 인하여 분리발주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 시설물 관리상의 낭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동일현장사업이나 동일구조물 사업은 가능한 통합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물활용을 극대화 하여 예산절감을 하도록 세출예산집행기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동일구조물 사업이나 동일 현장사업은 통합발주를 의무화 하였다.

동일현장사업의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제도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나 발주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현행 제도에서도 관련부처의 동의만 이루어 진다면 가능해지며 대표적인 사례가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각부처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한 『다락원』이다.

3. 시설비(401-01)의 낙찰차액 사용방법 개선

예산과목중 시설비의 경우 경쟁입찰로 인하여 보통 13%이상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며 그동안에는 동일 세목내 에서도 본사업이 아닌 경우 변경하여 사용할수 없도록 하였으나 사업예산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동일편성목내에서 토지매입비, 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4. 재배정 예산 집행제도의 합리적 개선

그동안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경리관 내에서 예산을 재배정 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예산편성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제도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배정 예산의 집행은 본청에서 의회나 사업소 시군구나 읍면동 또는 본청, 사업소에서 시군구 또는 사업소, 읍면동에 한정하여 재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 법인카드 사용 제한업종의 구체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린카드는 사용제한업종이 자치단체별로 각각 다르고 일부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유흥업소에서 카드사용이 이루어져 지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용 제한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제한업종을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제한업종

-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업종(이·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마사지 등)
- 레저업종(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전화방, 비디오방 등)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6. 법인카드 도안의 개인카드와 차별화

그동안 법인카드는 개인카드와 도안이 차별화 되어있지 않아 사적인 용도로 잘못 사용되는 일이 발생되어 왔다. 특히 야간에는 카드의 식별이 사실상 어려워 개인적인 용도로 잘못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카드를 일반의 개인카드와 도안을 완전히 다르게 차별화 하여 오용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였다.



7. 민간이전 경비의 집행방법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이전 경비는 민간위탁경비를 비롯하여 사회단체보조금, 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등 매년 그 액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경비집행방법이 정형화 되어있지 않았고 집행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집행에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경비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산정하고 위탁사업자의 선정은 지방계약법령이나 지방자치법령에 의하여 실시하며 민간이전경비의 제3자 위탁금지, 수익금의 자치단체 반환 및 사용용도의 명시, 정산을 의무화 하는 동시에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클린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8. 시설부대비의 집행기준 구체화

시설부대비는 각종시설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잡비를 사용하도록 편성되는 예산이나 그동안 시설부대비의 집행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집행해서는 안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시하고 목적외로 사용되는일이 없도록 정하였다 특히 시설부대비를 부당하게 인출하여 각종 접대비 명목으로 편법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시설부대비로 집행할수 없는 경우
 - 국외여비로 집행할수 없음
 - 민간투자사업비의 시설부대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집행 해야함
 - 낙찰차액을 변경하여 국외여비나 국내여비로 집행할수 없음
- 시설부대비로 집행할수 있는경비
 - 공사시공 계획 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성 및 통관수수료
 -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임금,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 체재비 및 피복비
 -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도로 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전주 건식에 따른 농작물 피해,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 시설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사업 등)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사무관리비(201-01)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 시설부대비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
-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대상 사업인 경우에만 파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의 현장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미만 현장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
 -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의 규정에 따라 지급

- 공사현장과 근무처와의 왕복교통비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9.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명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거나 재해의 연금을 내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축·조의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집행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10. 급식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한도금액 상향조정

그동안 급식비의 1인 1식 단가는 5천원 이었으나 이는 2001년 정해진 단가로서 그동안 물가 상승률 (16.5%)반영이 필요하여 7천원으로 상향조정 하였다. 이는 공무원 국내 여비중 식비도 1인1식단가가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조정된데 따른 조치라고 볼수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단가의 경우에도 종전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서 현실화 하였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4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토록 하였다.

11. 예산집행 절차 간소화 및 집행의 실용성확보

가.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검사완화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출원이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검사를 1회로 단축하고 내실 있는 검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예산집행 품의시 회계부서 사전협의대상 축소

그동안 자치단체에서는 내부통제를 위하여 각실과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예산집행 품의단계에서 회계부서와 사전협의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소액의 금액까지 사전협의제를 운영하다 보니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인하여 예산집행의 원활함이 이루어지지 못해 업무처리의 애로 요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계부서 협의의 대상을 현행 1백만원 이상에서 2백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국내여비의 경우 협의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다. 일용직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일괄 납부로 예산절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매월 임금 지급시 월별로 원천공제하여 납부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1/4분기에 일괄하여 납부토록 하여 예산절감(5%정도)을 도모토록 하고 있다.

라. 인터넷 상거래방식에 의한 물품구매 확대

그동안 전자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한도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인터넷 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구매는 5백만원까지만 가능했었다.

지난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007.9.20)으로 인하여 전자 소액수의 계약 금액 대상이 상향조정(5백만원 → 2천만원)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상거래 방식에 의한 물품구매를 2천만원까지 상향조정하게 되었다.

12. 기타 주요 제도개선내용

가. 국내여비 전용카드사용 근거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여비조례에 의하여 국내여비에 대한 정산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숙박비와 교통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여비전용카드를 실과단위로 만들어서 사용토록 하였다.

나. 지방의원 위원회참석수당 지급유무 기준명시

지방의회 의원이 당해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세

출예산집행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수당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신용카드 오(誤)사용시 처리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착오등으로 개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나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한 경우 법인카드를 취소하고 개인카드를 사용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카드사용으로 인한 잘못된 예산 집행시 즉시 시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이미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잘못사용한 공무원이 즉시 반납 처리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 토록 하였다

III. 맺는말

이상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지역주민, 시민단체, 언론 등의 관심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을 보다 알뜰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투명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마련된 세출예산의 집행기준은 이러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대폭 보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예산집행의 합리성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